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합치 조치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서설

1. 이 부속서의 대한민국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1목부터 5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2.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의 기준의 조치
 - 1) 제12.2조(내국민대우)
 - 2) 제12.3조(최혜국대우)
 - 3) 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2.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2.8조(고위경영진과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2.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12.2조(내국민대우) · 제12.3조(최혜국대우) · 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제12.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2.8조(고위경영진과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준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 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제12.9조제1항가호에 따라 볍,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2.9조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2.9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이 부속서 12다(구체적 약속)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2.9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대한민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국민,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2.2조(내국민대우)·제12.3조(최혜국대우)·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2.5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

도에서 제9.3조(내국민대우)·제9.4조(최혜국대우) 또는 제9.7조(이행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7. 부록 III-가는 양 당사국이 제12.2조(내국민대우) 또는 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2.10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이 되는 것
으로 간주하는 특정 조치를 기재한다.

8. 제 10.2 조(내국민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II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2 나(국경 간 무역)에
명시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제 12.5 조제 1 항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록 III-가

제 12.4 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 12.10 조제 1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다음의 조치는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조치 또는 관련 법에 대한 어떠한 개정·수정 및 변경도 본래 조치의 정신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할 것이다.

- 가.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관련 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는 업무 만 영위할 수 있다[보험업법(법률 제 7971 호, 2006. 8. 29.) 제 10 조와 제 11 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493 호, 2006. 5. 30.) 제 15 조와 제 16 조].
- 나. 대한민국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된다[보험업감독규정 제 5-9 조(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9-43 호, 2009. 7. 22.)].
- 다.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외국의 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원화로 지급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 5-11 조 및 제 7-8 조부터 제 7-10 조(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18 호, 2009. 9. 30.)].
- 라. 대한민국 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된다[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 2 조(금융통화위원회, 1999. 8. 19.),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법률 제 8143 호, 2006. 12. 3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8 조의 2(대통령령 19464 호, 2006. 5. 3.)].
- 마. 순매각 포지션의 합계 또는 순매입 포지션의 합계 중 더 큰 값에 의하여 (약식방법) 계산되는 외국환은행의 종합순노출 포지션은 전월말 총 자본의 50 퍼센트로 제한된다[외국환거래법 제 11 조 제 2 항 (법률 제 9351 호, 2009. 1. 30.)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2-9 조(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18 호, 2009. 9. 30.)].
- 바. 증권 신용공여는 신용한도금액과 수익의 운용에 대한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는 증권의 매도와 매입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신용공여가 허용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2 조(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 조(대통령령 제 21291 호, 2009. 2. 3.)].

- 사.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여액은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법률 제 7929 호, 2006. 4. 28.)].
- 아. 대한민국에 설립된 은행,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은 관련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제 27 조 및 제 28 조(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0 조 및 제 41 조(법률 제 9407 호, 2009. 2. 3.),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조 및 제 44 조(대통령령 제 21291 호, 2009. 2. 3.)].
- 자. 금융기관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은행법 제 38 조(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보험업법 제 105 조(법률 제 8902 호, 2008. 3. 14.)].
- 차. 대한민국의 비거주자는 대한민국에서의 실제적인 이용만을 위하여 외화를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 7-8 조부터 제 7-10조까지, 그리고 제7-36 조부터 제7-39조까지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18 호, 2009. 9 30.)].
- 카. 대한민국은 예금 이자율 · 대출 이자율 · 그 밖의 이자율 ·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은행법 제 30 조(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금융통화위원회, 2003. 12. 2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8 조 및 제 15 조(법률 7523 호, 2005. 5. 3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 및 제 9 조(대통령령 19019 호, 2005. 8. 31.)].

다음의 조치는 제 12.10 조제 1 항에 해당되고, 따라서 제 12.2 조(내국민대우)는 대한민국이 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조치 또는 관련 법에 대한 모든 개정 · 수정 또는 변경은 제 12.10 조제 1 항의 범위에 해당할 것이다.

- 가. 외국보험사 지점의 영업기금은 자본금으로 간주될 것이며, 본점의 자본금은 그러한 지점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액 또는 대출하려고 하는 대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험업법 제 9 조제 3 항(법률 제 8902 호, 2008. 3. 14.)]. 그리고
- 나. 외국보험사의 대한민국의 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총계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 영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75조(법률 제8902호, 2008. 3. 14.)].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 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¹⁾
3. 제 12.2 조(내국민대우) 및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대한민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대한민국은 제 12.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 12.9 조(비합치 조치) 제 1 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 12.9 조제 1 항다호는 제 12.4 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 12.4 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현지법인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 1 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보험업법(법률 제 7971 호, 2006. 8. 29.) 제 91 조

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493 호, 2006. 5. 30.) 제 40 조

유보내용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의 2 명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 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대한민국은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수와 같이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하며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은행판매비율에 대하여 제한함을 밝힌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12.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 7100 호, 2004. 1. 20.)</p> <p>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 7186 호, 2004. 3. 11.)</p> <p>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 7504 호, 2005. 5. 26.)</p>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 7428 호, 2005. 3. 31.)</p> <p>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 7505 호, 2005. 5. 26.)</p> <p>선원법(법률 제 8041 호, 2006. 10. 4.)</p>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7913 호, 2006. 3. 24.)</p> <p>유선 및 도선사업법(법률 제 7985 호, 2006. 9. 22.)</p> <p>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7279 호, 2004. 12. 31.)</p> <p>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 8016 호, 2006. 9. 27.)</p> <p>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 8014 호, 2006. 9. 27.)</p> <p>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 7002 호, 2003. 12. 11.)</p> <p>항공운송사업진흥법(법률 제 6621 호, 2002. 1. 19.)</p> <p>도로교통법(법률 제 7969 호, 2006. 7. 19.)</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 8050 호, 2006. 10. 4.)</p> <p>야생동식물보호법(법률 제 8045 호, 2006. 10. 4.)</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 8138 호, 2006. 12. 30.)</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7796 호, 2005. 12. 29.)</p> <p>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 7305 호, 2004. 12. 31.)</p>

원자력손해배상법(법률 제 7188 호, 2004. 3. 11.)
화물유통촉진법(법률 제 8014 호, 2006. 9. 27.)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 7918 호, 2006. 3. 24.)
낚시어선업법(법률 제 7642 호, 2005. 7. 29.)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 7929 호, 2006. 4. 28.)
전자서명법(법률 제 7813 호, 2005. 12. 30.)
변호사법(법률 제 7894 호, 2006. 3. 24.)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 7425호, 2005. 3. 31.)

유보내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2 나(국경 간 무역)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보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
하는 데 있어 그러한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어떠한 그
러한 서비스도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도 법적 의무의 충족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은행법(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제 15 조 및 제 16 조의 2</p> <p>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422 호, 2006. 3. 29.) 제 5</p> <p>조 및 별표</p> <p>금융지주회사법(법률 제 7529 호, 2005. 3. 31.) 제 8 조 및</p> <p>제 8 조의 2</p> <p>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422 호, 2006. 3. 29.) 제 6 조</p> <p>의 3</p>
유보내용	<p>1.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²⁾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p> <p>2. 투명성 목적상</p> <p>가.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서 기술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승인기준을 적용한다.</p> <p>나. 자연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p> <p>다.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외의 기업체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p>

2)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지분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체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퍼센트까지로 증가시킬 수 있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제 58 조

은행업인가지침(2004. 7. 23.) 제 17 항나호

은행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6-87호, 2006. 12. 28.) 제10조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대한민국에서의 각 지점 설치는 개별 인가를 요구한다.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그러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제 373 조, 제 375 조, 제 379 조 및 제 386 조
유보내용	한국거래소만이 대한민국에서 증권 또는 파생상품 시장을 운용할 수 있다.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제 294 조부터 제 323 조 및 제 166 조
유보내용	한국예탁결제원만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결제기관으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예탁자 계정간의 그러한 증 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제 298 조, 제 378 조 및 제 166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291호, 2009. 2. 3.) 제178조
유보내용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만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12.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제 166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291호, 2009. 2. 3.) 제184조
유보내용	일반 투자자(일부 전문투자자 ³⁾ 를 포함한다)가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 래한다.

3)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2 호, 2009. 2. 3)에 의한 기관투자자는
제외한다

9.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은행법(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제 62 조 및 제 63 조</p> <p>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422 호, 2006. 3. 29.) 제 25 조 및 제 26 조</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제 65 조</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91 호, 2009. 2. 3.) 제 65 조</p>
유보내용	<p>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한민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대한민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현지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p> <p>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그 은행 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된다.</p>

10.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 8145 호, 2006. 12. 30.) 제 7 조 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 8143 호, 2006. 12. 30.) 제 6 조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 7929 호, 2006. 4. 28.) 제 5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제 355 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 7883 호, 2006. 3. 24.) 제 5 조 외국환거래법(법률 제 8050 호, 2006. 10. 4.) 제 9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제 254조, 제 258조 및 제 263조
유보내용	다음 유형의 사업은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신용협동조합 나. 상호저축은행 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라.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마. 신용정보회사 바. 일반펀드관리회사 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아. 채권평가회사

1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 7929 호, 2006. 4. 28.) 제 30 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에서 특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다.

1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 9703 호, 2009. 5. 21.)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 9741 호, 2009. 5. 27.)
중소기업은행법(법률 제 9460 호, 2009. 2.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 7882 호, 2006. 3. 24.)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 7638 호, 2005. 7. 29.)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 7611 호, 2005. 7. 2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가. 다음 금융기관(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이라 한다)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정책금융공사
3) 중소기업은행
4) 한국주택금융공사
5)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6) 수산업협동조합
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특별대우를 부
여할 수 있다.
1)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
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2)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자본 대비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3)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또는

4) 공공자산 및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특정
조세의 면제

1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고위경영진과 이사회(제 12.8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 7882 호, 2006. 3. 24.) 제 16 조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 7638 호, 2005. 7. 29.) 제 49 조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7611호, 2005. 7. 21.) 제51조

유보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최고 및 차
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1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주택법(법률 제 8050 호, 2006. 10. 4.) 제 75 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31호, 2006. 8. 18.) 제5조 제2항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12.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외국환거래법(법률 제 8050 호, 2006. 10. 4.) 제 9 조
유보내용	대한민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 간 중개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준의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된다.

제2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12.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2 나(국경 간 무역)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제 3 자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 영역에서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공급된 어떠한 “강제적인” 제 3 자 보험서비스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유보내용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소유 또는 정부지배 기관을 민영화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은 이 기관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계속적인 보증 또는 한시적인 추가 보증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2.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가. 공모의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나. 공모 이후, 그 거래소 또는 그 결제원이 폐루 금융 기관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록 보장한다.